G - 67 - 2011

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

2011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대한기계학회 서상호
- 제·개정 경과
- 2011년 11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- The Work at Height, HSE, 2005
-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총칙 제2장(작업장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총칙 제3장(통로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 제1장(기계·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)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1년 12월 26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 적

건물 외벽 및 유리창 청소작업은 높은 곳에서 실행하는 작업인 만큼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므로 근로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 다. 이 지침은 작업 환경, 작업 장비, 교육 등 작업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요소와 그에 따른 위험요소 그리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사고 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건물 외벽을 청소하는 작업장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킹크(Kink)"란 와이어로프 등이 뒤틀리고 꼬여 심하게 접히고 굽은 것을 말한다.
- (나) "스트랜드(Strand)"란 실이나 철사를 꼬아서 만든 줄로 와이어로프에서는 로프를 형성하고 있는 꼬임의 작은 가닥을 말한다.
- (다) "얀(Yarn)"이란 로프, 그물 등의 원사로 사용되는 섬유를 말한다.
- (라) "피치(Pitch)"란 나사산의 서로 대응하는 두 점을 축선에 평행하게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. 로프의 경우에는 이웃하는 꼬임과 꼬임 사이의 축방향간격이 1피치이다.

G - 67 - 2011

- (마) "샤클(Shackle)"이란 U자형인 쇠붙이로 로프를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법 시행령, 같은법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작업 종류

건물 외벽 및 유리창 청소 작업은 아래의 다양한 세부 작업들을 포함한다. 이들 작업은 작업 면에 세척제를 뿌린 후 도구를 이용해 닦아내고, 물청소로 마무리하는 단계로 진행된다.

- (1) 시멘트, 화강석, 벽돌, 타일 등 건물 벽체 청소
- (2) 유리창 청소
- (3) 화재 발생 후 그을음 제거
- (4) 새똥 또는 오물 제거
- (5) 실리콘 보수 및 방수 작업
- (6) 발수제 시공 작업
- (7) 간판 청소

5. 작업 전 고려사항

5.1 작업 계획

G - 67 - 2011

- (1) 작업의 필요성을 점검한다.
- (2) 작업의 계획자, 관리감독자, 작업자 각각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다.
- (3) 작업 전에 작업 장소, 작업 도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.
- (4) 사전 위험성 평가를 통해 나타난 위험요소를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모두가 숙지하도록 한다.
- (5) 긴급상황 또는 구조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.

5.2 날씨

작업 시 날씨 상태, 특히 바람은 작업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기상상태가 작업 안전에 영향을 줄 경우 작업을 연기한다.

5.3 교육

작업자는 물론 관리감독자와 장비관리자 등 당해 작업에 관련된 모든 근로자는 작업 내용과 위험요소 및 예방대책 그리고 긴급상황 시의 조치 등에 관해 숙지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5.4 작업 장소

작업 장소는 근로자가 작업 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므로 위험 도가 높은 장소는 피하고, 작업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험요소는 사전에 제거되어야 한다.

5.5 작업 도구 및 장비

G - 67 - 2011

(1) 작업 도구 및 장비 선택

작업자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작업도구 및 장비(이하 작업도 구 등)가 마련되어야 한다. 작업도구 등 선택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(가) 안전성이 확보되고 검증된 작업 도구 등을 선택한다.
- (나) 작업 별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선택한다.
- (다) 작업장소의 상태에 적절한 작업 도구 등을 선택한다.

(2) 작업 도구 등 검사

작업 도구 등에 대한 검사는 육안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하여 안 전성을 확인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 작업에 유경험의 능력 있는 근로자가 수행해야 한다. 또한 매 검사 시 검사내용을 기록하여 작업도구 등의 안전 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.

5.6 낙하물 발생 시 사고 예방

- (1) 작업 시 작업공간 위로부터 낙하물의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모 등 개인보호 구를 착용한다.
- (2) 작업공간 아래의 지상에 보행자의 통행을 통제하여야 한다.

6. 작업 시 주의 사항

(1) 풍속이 10m/s 이상인 경우 등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작업자 끼리 또는 외벽에 부딪힘이 발생할 수 있고 비계에서의 추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.

G - 67 - 2011

- (2) 작업 중 갑자기 돌풍이 불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벽체에 붙어서 기다리거나 가능하다면 바닥에 내려와 대기하여야 한다.
- (3) 작업 중 햇빛이 강하면 바닥으로 내려와서 휴식을 취한 후 빛이 약해지는 때를 기다려 작업을 개시한다.
- (4) 작업 중 도구를 떨어뜨리거나 벽면과의 충돌 또는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방심하지 않고 긴장하도록 한다.
- (5) 작업 전 어지럼증이 있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는다.
- (6) 작업 전 도구의 길이를 자신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적절히 조절한다.
- (7) 작업 전 로프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. 이상이 있을 시 반드시 신품으로 교체한다.
- (가) 스트랜드 및 소선의 손상이 발생된 로프의 사용 금지
- (나) 킹크가 발생하거나 형태가 변형된 로프의 사용 금지
- (다) 스트랜드에 풀림이 발생한 로프의 사용 금지
- (라) 마모되거나 부식된 로프의 사용 금지
- (마) 스트랜드 외부에 얀 절단으로 털이 심하게 부풀어 오르고 지름의 감소가 현저한 것은 사용 금지
- (바) 1피치 정도 떨어져 양손으로 잡고 로프의 꼬임을 느슨해지게 비틀어서 느슨함이 큰 것은 사용 금지
- (8) 깔판의 마모, 파손, 소재의 부식 및 체결상태를 사전에 확인한다.

G - 67 - 2011

- (9) 작업 중에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없으므로 작업 도구가 빠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긴다. 불가피하게 작업도구나 재료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내려와서 다시 챙겨 가거나 보조 작업자로 하여금 창문을 통해 전달 받도록 한다.
- (10) 작업 전에 건물 특성을 숙지한다.
- (가) 외벽에 붙어 있는 난간 등 건물 외관을 관찰하여 작업의 어려움이 예상 되는 곳을 파악한다.
- (나) 외벽이 잘 미끄러지는 재질인지를 확인한다.
- (다) 외벽에 구조물 등 지장물이 붙어 있는지,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 한다.
- (11) 매듭을 부실하게 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단단하게 매도록 하고 꼭 확인하여야 한다. 보통 위아래로 자주 이동하는 경우에는 1자 매듭을 사용하고 한자리에 오래 머무르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8자 매듭을 사용한다.
- (12) 작업용 로프 및 안전보조로프는 반드시 건물의 고정지지물에 2개소 이상 안전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물통, 쇠뭉치 등 고정되지 않은 물체 등에는 결속하지 않는다.
- (13)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. 근로자에 대한 반복적 안전교육을 통해 개인보호구의 착용이 습관화되도록 유도한다.
- (14) 건물 옥상에서 작업발판으로 옮겨 탈 때 사고위험이 특히 높으므로 .주의 를 집중하고 천천히 하강한다.
- (15) 고층 건물 옥상에서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므로 가급적 아래를 내려 다보지 말아야 한다.
- (16) 줄을 매단 후에는 줄이 충분히 바닥에 닿았는지 확인한다. 줄이 바닥에 닿지 않았을 경우 줄이 끝나는 부분에서 작업자가 추락할 수 있다.

G - 67 - 2011

- (17) 작업 중 줄이 바닥에 닿아 있지 않고 짧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보조 작업 자로 하여금 줄을 다시 내리도록 하고 새로운 줄에다가 샤클을 추가로 걸 어 줄이 끝나더라도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한다.
- (18) 고층부에서는 작업자가 좌·우로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좁으므로 긴 작업도 구 사용시 작업도구에 의한 충돌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- (19) 벽체 또는 유리창에 세척제를 살포할 때는 세척제가 눈에 튀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호 장갑, 보안경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.
- (20) 낙하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상의 작업반경 내 통행을 금지한다.
- (21) 기타 달비계 및 달비계 로프 이용 시 주의사항은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.

7. 외벽청소 작업 시 사고 유형 및 예방대책

7.1 사고 유형

(1) 추락

- (가) 로프를 이용한 유리창 청소작업 시 로프 파단에 의한 추락
- (나) 유리창 청소 작업 시 흔들림 발생으로 무게 중심 상실로 인한 추락

(2) 충돌

- (가) 로프에 매달린 상태로 동료 작업자와 충돌
- (나) 공중에 매달린 상태로 이동을 잘못하거나 돌풍으로 인해 벽체에 충돌

G - 67 - 2011

(3) 낙하

공중 작업자의 실수에 의해 세척제, 물, 도구 등의 낙하

7.2 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대책

- (1) 추락에 대한 예방대책
 - (가) 로프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사전에 철저히 한다.
 - (나) 로프가 체결된 지붕 또는 지상에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작업 중 위험이 예상되는 사항을 작업자에게 전달하도록 한다.
 - (다) 로프가 체결된 지붕 또는 지상에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비상상황 시 즉 시 구조할 수 있도록 한다.
- (라) 안전대,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.
- (2) 충돌에 대한 예방대책
- (가) 작업자 끼리 충분한 간격을 유지한다.
- (나) 공중에 매달린 채로 이동할 시에는 벽체에 장애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동한다.
- (다)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.
- (3) 낙하에 대한 예방대책
- (가) 작업자의 아래 지상의 작업반경 주변에 안전구역을 지정하고 방책설치, 안전 표지판 부착, 안내 및 통제자 배치 등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.

G - 67 - 2011

(나) 낙하물이 떨어질 경우 작업자는 위급상황을 지상에 알리도록 하여야 한 다.